

보편적서비스제도 현황과 과제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jhbyun@etri.re.kr

A Study on the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

Jae Ho Byun

ETRI

요약

1983년 미국에서 보편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제도(Universal Service Fund)가 도입된 이래 각국 정부는 저렴한 요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에 제도개선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손실금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선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서론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경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독점 시대에는 독점사업자의 내부 상호보조에 의해 보편적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장거리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에는 장거리사업자가 지불하는 접속료를 통해 보편적서비스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통신시장에 전면적인 경쟁이 도입되는 1990년 후반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속료의 왜곡을 해소하여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요금 재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를 마련하여 보편적서비스가 유지 발전되도록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쟁도입 이후 접속료를 통한 보편적서비스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별도의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를 통해 보편적서비스 제공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손실보전 상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무형편의 적용, 손실보전비용의 적용 등 여러 가지 손실보전금 축소장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고는 이러한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편논의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보편적서비스의 개념과 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가.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보편적서비스라는 용어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문서마다 내포된 의미가 다르다. 또한 보편적서비스는 기술의 발전과 수요의 변화로 인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보편적서비스는 좁게는 단순한 음성전화 서비스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상호접속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편적서비스의 의미는 국가마다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고정불변의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국제기구 및 미국과 영국에서의 정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에서는 '각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 수준의 품질을 구비한 최소한의 서비스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통신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1996년 통신법 및 1997년 FCC Order에 "모든 미국인들에게 affordab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를 공급하는 것"을 보편적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농촌, 이도 및 고비용지역에서의 기본통신서비스 제공, 학교 및 도서관의 통신요금할인 지원(E-rate), 시골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통